

제310회 임시회
2012. 5. 18(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5. 18(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4월 16일
- 회부일자 : 2012년 5월 2일

다. 상정일자 : 2012년 5월 9일

-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가. 제안이유

- 재해구호·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자립장학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현행 조례에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를 대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행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안 제4조 및 제10조)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9호 삭제(부칙)
 -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 동 조례안은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기능을 복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p> <p>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범위에서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 ----- -----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지원사업)</p> <p>①~③ (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p> <p>⑤ (생략)</p>	<p>제10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지원사업)</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p> <p>⑤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결정사항)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99. 1. 15)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
5.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6. 각종가격 및 요금의 조정
7. 품질관리의 정착을 위한 시책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8.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근로청소년 장학생 심사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2.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다음 사항
 -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
 - 나. 삭제 <2009. 7. 10>
 - 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심사
 - 라.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
 - 마. 충청북도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개정 2001. 9. 13)
 - 바. (삭제 2005. 5. 13)
 - 사. 외국인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 협의
 - 아. (삭제 2001. 2. 9)
 - 자. (삭제 2001. 2. 9)
13. 기타 도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5)